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004

발의연월일: 2024. 11. 28.

발 의 자: 김성원 · 이인선 · 김선교

정동만 • 박성훈 • 박충권

고동진 · 김정재 · 김소희

송석준 · 서일준 의원

(11인)

제안이유

우리나라 생산성은 OECD 38개국 중 33위에 정체되어 있으며, 특히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생산성은 2021년 기준 제조업, 서비스업 각각 30.2%, 44.9%로 저조한 상황임. OECD는 「2022년 한국경제보고서」에서 한국의 대 - 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가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이어져 임금・안전망・고용보호 등 다양한 사회 영역에서의 격차를 유발한다고 지적하였음.

그간 우리나라는 경제 주축인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R&D · 인력·판로 등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해왔으나, 기업 차원의 전사적 혁신전략 없이 기능별 분절적 지원으로 추진되어 생산성 향상 효과가 미흡한 실정임.

특히, 향후에는 대-중소기업 간 디지털 격차가 생산성 격차로 연결 되고, 생산 가능인구 감소로 인한 중소기업의 구인난 문제와도 악순환 구조로 이어질 것이 우려되는바, 그간의 중소기업 생산성 지원체계에 대한 혁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중소기업의 전사적 생산성 향상 활동에 대한 정부의 종 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생산성"을 기업의 부가가치를 상시근로자 수로 나눈 값(근로자 1 인당 부가가치)로 정의하고, 관련하여 "생산성 향상" 용어를 규정함 (안 제2조제13호 및 제2조제14호 신설).
- 나. 생산성 향상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 컨설팅 지원,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중소기업과 중견·대기업 간의 협력 촉진 등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함 (안 제62조의14 신설).
- 다.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전담기관의 지정 근거를 마련함(안 제62조의15 신설).
- 라.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이 제출한 종합계획에 대한 승인, 이행실적조사, 계획의 변경 및 중단 등을 규정함(안 제62조의 16부터 제62조의19까지 신설).
- 마. 승인기업에 대한 자금, 기술혁신, 스마트제조혁신, 인력, 판로 등의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승인기업에게 관련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

할 수 있게 함(안 제62조의20 신설).

- 바. 승인기업에 대한 외국인 인력, M&A, 투자 등에 관한 특례 근거를 마련함(안 제62조의21부터 제62조의23까지 신설).
- 사. 승인기업에 대한 규제개선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62조의24 신설).
- 아. 생산성 향상 관련 업무에 대한 위탁 근거와 함께,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를 마련함(안 제83조).

법률 제 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3. "생산성"이란 기업의 부가가치를 상시근로자 수로 나눈 값(근로 자 1인당 부가가치)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14. "생산성 향상"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활동을 통하여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 가. 제품 또는 서비스의 기획·설계·생산 과정을 효율적으로 개 선하는 활동
 - 나. 제품 또는 서비스의 개발·개선을 통하여 기업이 창출하는 부 가가치를 높이는 활동
 - 다. 제품 또는 서비스의 제공 방식, 마케팅 방식 등 기업의 수익 창출 방식을 개선하는 활동
 - 라. 조직구조 및 정보관리 개선, 인적자원 개발 등 기업 내부 자원의 효율화 및 질적 고도화를 도모하는 경영혁신 활동
 -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활동에 준하는 것으로서 중소벤 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활동

제4장의2(제62조의14부터 제62조의24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의2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

- 제62조의14(생산성 향상 기반 조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 업의 생산성 향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 을 추진할 수 있다.
 - 1. 생산성 향상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
 - 2. 생산성 향상 관련 컨설팅 지원
 - 3. 생산성 향상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 4. 생산성 향상 관련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대기업 간의 협력 촉진
 - 5. 그 밖에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업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제62조의15(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전담기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정책 수립의 지원
 - 2.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사업 지원
 - 3.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관련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 4. 제62조의18제1항에 따른 승인기업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
- 5. 그 밖에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 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 ③ 정부는 전담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전담기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담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제7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⑥ 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전담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을 수 없다.
- ⑦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운영과 제4항에 따른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2조의16(생산성 향상 종합계획의 승인 등) ① 생산성 향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생산성 향상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생산성 향상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 1. 생산성 향상 전략 및 추진내용(제2조제14호가목부터 제2조제14호

라목까지의 활동에 대한 검토 및 개선계획을 포함한다)

- 2. 실시기간 및 재원 투입계획
- 3. 생산성 향상으로 달성하려는 생산성 목표
- 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생산성 향상 종합계획을 제출한 중소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에게 해당 계획의 보완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산성 향상 종합계획의 승인신청을 반려하고 신청기업에게 반려의 취지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 1. 생산성 향상 종합계획상 거짓·부실 기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려 사유가 있는 경우
- 2. 신청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 3. 생산성 향상 종합계획의 내용이 생산성 향상과 무관한 경우
- 4. 생산성 향상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목표의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④ 그 밖에 생산성 향상 종합계획의 승인신청 및 반려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2조의17(공동 생산성 향상 종합계획의 승인) ①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산성 향상(이하 "공동 생산성 향 상"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62조의16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공동 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공동 생산성 향상 종합계획(이하 "공동 생산성 향상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 1.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이 그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과 공동으로 생산성 향상을 하려는 경우
- 2.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이 그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다른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생산 성 향상을 하려는 경우
- 3.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생산성 향상을 하려는 경우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동 생산성 향상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공동 생산성 향상 종합계획을 일괄하여 승인할 수 있다.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공동 생산성 향상 종합계획을 제출한 중소기업(이하 "공동계획 신청기업"이라 한다)에게 해당계획의 보완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 생산성 향상 종합계획의 승인신청을 반려하고 공동계획신청기업에게 반려의 취지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 1. 공동 생산성 향상 종합계획상 거짓·부실 기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려 사유가 있는 경우
- 2. 공동계획 신청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 3. 공동 생산성 향상 종합계획의 내용이 생산성 향상과 무관한 경우

- 4. 공동 생산성 향상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목표의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공동 생산성 향상 종합계획의 승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2조의18(종합계획의 이행실적조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생산성 향상 종합계획 또는 공동 생산성 향상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이하 "승인기업"이라 한다)의 종합계획 이행 여부와 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승인기업에 게 이행 실적 보고, 자료 제출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 상황이 승인받은 계획과 다른 경우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이행실적조사의 대상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2조의19(종합계획의 변경 및 중단 등) ① 승인기업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중소 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변경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 종합계획을 승인받을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상당한 경제상황변 화가 있는 경우
 - 2. 종합계획과 관련된 법령의 변경 등 예상할 수 없었던 정책환경의

변화가 있는 경우

- 3. 그 밖에 종합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에 관한 절차는 제62조의16 및 제62조의17을 준용한다.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62조의18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승인기업에 그 계획의 변경이나 중단을 권고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과 제3항에 따른 변경·중단의 권고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2조의20(승인기업 지원 및 사업특례 등) 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는 승인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1. 설비구입 및 연구개발 등 생산성 향상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융자 또는 출연
 - 2. 기술혁신(「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술 혁신을 말한다) 또는 경영혁신(「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 조제4호에 따른 경영혁신을 말한다) 지원
 - 3. 스마트제조혁신(「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마트제조혁신을 말한다) 지원
 - 4. 인력의 양성 · 공급에 관한 지원

- 5.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지원
- 6. 그 밖에 승인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필요한 지원
- ② 정부는 승인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승인기업에게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 1.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에 따른 기술혁신 촉진 지원 사업 또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3에 따른 경영 혁신 촉진 지원사업
- 2.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
- 3.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9조, 제10조, 제20조의3, 제24조 또는 제35조의5에 따른 사업
-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판로지원사업
- ③ 정부는 공동 생산성 향상 종합계획을 승인을 받은 대·중소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에 따른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
- 제62조의21(외국인 인력 특례)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승인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 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62조의22(합병절차 등의 특례) 승인기업의 합병절차, 주식교환, 영업양수, 소규모합병, 간이합병에 관하여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6까지 및 제15조의8부터 제15조의10까지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벤처기업"은 "승인기업"으로 본다.
- 제62조의23(벤처투자회사 등의 투자에 관한 특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이 같은 법에 따라 승인기업에 투자할 경우 그 투자지분은 같은 법 제38조 및 제51조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본다.
- 제62조의24(규제개선의 지원) ① 승인기업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규제의 개선을 신청할 수있다.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중소벤처 기업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정비가 필요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처리하 여야 한다.
 - ③ 관계 행정기관이 규제개선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승인기업에 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에 따른 회신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4

- 5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회신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중소기업정책심의회(「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4에 따른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 결과, 신청 내용에 대한 처리 결과, 규제개선 여부 등을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에게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의 장에게 통보하고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 해당 규제를 개선하여야 한다.
- ⑥ 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따라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정비 여부를 검토하고, 조속히 관 련 법령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 ⑦ 승인기업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가 필요한 경우,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또는 제10조의6,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 또는 제38조의2,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 또는 제90조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와 관련한 세부사항 및 규제개선의 심사기준, 절차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3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장의2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중소기업 관련 단체나 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3. 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를 하는 단체나 기관의 임직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삭 제	
<u> <신 설></u>	<u>13. "생산성"이란 기업의 부가</u>
	가치를 상시근로자 수로 나눈
	값(근로자 1인당 부가가치)으
	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u>말한다.</u>
<u><신 설></u>	<u>14. "생산성 향상"이란 다음 각</u>
	목의 어느 하나의 활동을 통
	하여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u>것을 말한다.</u>
	가. 제품 또는 서비스의 기획
	<u>•설계 • 생산 과정을 효율</u>
	적으로 개선하는 활동
	나. 제품 또는 서비스의 개발
	•개선을 통하여 기업이
	<u>창출하는 부가가치를 높이</u>
	<u>는 활동</u>
	다. 제품 또는 서비스의 제공
	<u>방식, 마케팅 방식 등 기업</u>
	의 수익 창출 방식을 개선
	하는 활동

<신 설>

라. 조직구조 및 정보관리 개선, 인적자원 개발 등 기업내부 자원의 효율화 및 질적 고도화를 도모하는 경영혁신 활동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활동에 준하는 것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활동제4장의2 중소기업 생산성향상 지원

제62조의14(생산성 향상 기반 조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생산성 향상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
- 2. 생산성 향상 관련 컨설팅 지원
- 3. 생산성 향상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 4. 생산성 향상 관련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대기업 간의 협력 촉진
- 5. 그 밖에 중소기업의 생산성

<u>향상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u>업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 항에 따른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중소 기업 등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 원할 수 있다.
- 제62조의15(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전담기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 관은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 소기업 생산성 향상 전담기관 (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정책수립의 지원
 - 2.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사업 지원
 - 3.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관련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 4. 제62조의18제1항에 따른 승인기업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

- 5. 그 밖에 중소기업 생산성 향 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벤 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하는 사 항
- ③ 정부는 전담기관의 업무수행 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 항에 따라 지정한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전담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제7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 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 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 을 하여야 한다.
- ⑥ 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전담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을 수 없다.

①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운영과 제4항에 따른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의16(생산성 향상 종합계획의 승인 등) ① 생산성 향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생산성 향상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생산성 향상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1. 생산성 향상 전략 및 추진내용(제2조제14호가목부터 제2조제14호 라목까지의 활동에 대한 검토 및 개선계획을 포함한다)

- 2. 실시기간 및 재원 투입계획
- 3. 생산성 향상으로 달성하려는 생산성 목표
- 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
 한 경우 생산성 향상 종합계획

- 을 제출한 중소기업(이하 "신청 기업"이라 한다)에게 해당 계획 의 보완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산성 향상 종합계획 의 승인신청을 반려하고 신청기 업에게 반려의 취지 등을 통보 하여야 한다.
- 생산성 향상 종합계획상 거
 전·부실 기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려 사유가 있는
 경우
- 2. 신청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 되지 아니하는 경우
- 3. 생산성 향상 종합계획의 내용이 생산성 향상과 무관한경우
- 4. 생산성 향상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목표의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④ 그 밖에 생산성 향상 종합계 획의 승인신청 및 반려에 관하

<u>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u> 정한다.

제62조의17(공동 생산성 향상 종합계획의 승인) ① 중소기업이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산성 향상(이하 "공동생산성 향상"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62조의16제1항각호의 사항 및 공동생산성향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공동생산성향상 향상 종합계획(이하"공동생산성향상 중합계획(이하"공동생산성향상 중합계획"이라 한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있다.

- 1.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과 협 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이 그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과 공동 으로 생산성 향상을 하려는 경우
- 2.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과 협 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이 그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과 협력 관계에 있는 다른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생산성 향상을 하려 는 경우

- 3.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생산성 향상을 하려는경우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동 생산성 향상에 참여하는 중소기 업의 공동 생산성 향상 종합계 획을 일괄하여 승인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 한 경우 공동 생산성 향상 종합 계획을 제출한 중소기업(이하 "공동계획 신청기업"이라 한다) 에게 해당 계획의 보완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 생산성 향상 종 합계획의 승인신청을 반려하고 공동계획 신청기업에게 반려의 취지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 1. 공동 생산성 향상 종합계획 상 거짓・부실 기재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반려 사유가 있는 경우
- 2. 공동계획 신청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3. 공동 생산성 향상 종합계획

- 의 내용이 생산성 향상과 무 관한 경우
- 4. 공동 생산성 향상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목표의 달성이불가능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⑤ 공동 생산성 향상 종합계획의 승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2조의18(종합계획의 이행실적 조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생산성 향상 종합계획 또는 공 동 생산성 향상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이하 "승인기업" 이라 한다)의 종합계획 이행 여 부와 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조 사하여야 한다.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 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승인 기업에게 이행 실적 보고, 자료 제출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업은 특 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

야 한다.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 항에 따른 이행 상황이 승인받 은 계획과 다른 경우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이행실적조사
 의 대상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 제62조의19(종합계획의 변경 및 중단 등) ① 승인기업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 유로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변경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 종합계획을 승인받을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상당한 경

 제상황변화가 있는 경우
 - 2. 종합계획과 관련된 법령의

 변경 등 예상할 수 없었던 정

 책환경의 변화가 있는 경우
 - 3. 그 밖에 종합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에 관한

<u>절차는 제62조의16 및 제62조의</u> 17을 준용한다.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62 조의18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승인기업에 그 계획의 변경이나 중단을 권고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과 제 3항에 따른 변경·중단의 권고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제62조의20(승인기업 지원 및 사 업특례 등) ① 정부 및 지방자 치단체는 승인기업의 생산성 향 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을 할 수 있다.
 - 1. 설비구입 및 연구개발 등 생

 산성 향상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융자 또는 출연
 - 2. 기술혁신(「중소기업 기술혁신 작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술혁신을 말한다) 또는 경영혁신(「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경영혁신을 말한다) 지원
 - 3. 스마트제조혁신(「중소기업

-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 마트제조혁신을 말한다) 지원
- 4. 인력의 양성·공급에 관한 지원
- 5.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지원
- 6. 그 밖에 승인기업의 생산성 <u>향상에 필요한 지원</u>
- ② 정부는 승인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 원사업을 승인기업에게 우선하 여 지원할 수 있다.
- 1.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법」 제9조에 따른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또는 「중소기 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의3에 따른 경영혁신 촉진 지 원사업
- 2.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
- 3.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 법」 제9조, 제10조, 제20조의 3, 제24조 또는 제35조의5에 따른 사업

<신 설>

-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6 조에 따른 판로지원사업
- ③ 정부는 공동 생산성 향상 종합계획을 승인을 받은 대·중소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에 따른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
- 제62조의21(외국인 인력 특례) 법
 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승인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
 류기간 상한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62조의22(합병절차 등의 특례) 승인기업의 합병절차, 주식교환, 영업양수, 소규모합병, 간이합병에 관하여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6까지 및 제15조의8부터 제15조의1

<신 설>

 0까지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

 우 "벤처기업"은 "승인기업"으

 로 본다.

제62조의23(벤처투자회사 등의 투자에 관한 특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이 같은 법에 따라 승인기업에 투자할 경우 그 투자지분은 같은 법 제38조및 제51조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62조의24(규제개선의 지원) ① 승인기업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소벤처기 업부장관에게 규제의 개선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 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 정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 내용 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15일 이 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 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정비가 필요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 다.

③ 관계 행정기관이 규제개선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승인기 업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에 따른 회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45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회신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중소기업정책심의회(「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4에 따른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결과, 신청 내용에 대한 처리결과, 규제개선 여부 등을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에게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할수 있다.

-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 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관계 행 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규제 개선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 해당 규 제를 개선하여야 한다.
- ⑥ 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따라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정비 여부를 검토하고, 조속히 관련 법령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 ⑦ 승인기업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가 필요한 경우,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또는 제10조의6,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관한 특별법」 제37조 또는 제38조의2,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투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 또는 제90조의요건과 절차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제8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② (생 략) <u><신 설></u>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 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 다.

1. · 2. (생략)

<신 설>

신청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와 관련한 세부사항 및 규제개선의 심사기준, 절차 및 방법에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 ② (현행과 같음)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 장의2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중소 기업 관련 단체나 기관의 장에 게 위탁할 수 있다.

<u>4</u>	 	 	 	

- 1. 2. (현행과 같음)
- 3. 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를 하는 단체나 기관의 임직원